

# 분실물 폐기 공고문

「민법」 제253조, 「유실물법」 제12조, 「월계구민체육센터 이용약관」 제11조에 의거하여 월계구민체육센터에서 보관하는 분실물 중 아래와 같이 6개월의 보관기간이 경과한 물품을 폐기하고자 공고합니다.

## 1. 개 요

- 가. 보관장소: 월계구민체육센터
- 나. 보관기간: 2026년 1분기(1월 ~ 3월)
- 다. 폐기일자: 2026. 10. 20.(화)
- 라. 물품내역: 폐기일자 기준 6개월 전 보관 분실물

## 2. 내 용

- 가. 분실물의 확인 및 반환을 원하는 자는 폐기일자 전까지 월계구민체육센터에 방문하여 현장에서 확인 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.
- 나. 공고에 분실물 사진을 첨부하오니 반환을 원하는 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나. 공고에 지정된 기한까지 찾아가지 않은 분실물은 별도의 통보 없이 전량 폐기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 3. 기타사항

- 가. 「민법」 및 「유실물법」에 의거하여 공고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그 소유권은 월계구민체육센터가 취득합니다.
- 나. 자세한 사항은 월계구민체육센터(☎ 02-2289-6870)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

## 품목 및 사진



수영물품(수영복,수영모자,물안경)



의류 및 잡화



운동화



가방 외 물품